

##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

제정 1973. 8. 21. 조례 제 88호  
개정 1977. 7. 26. 조례 제 263호  
개정 1980. 7. 3. 조례 제 385호  
개정 1982. 10. 21. 조례 제 562호  
개정 1989. 5. 26. 조례 제 955호  
개정 1989. 11. 1. 조례 제 985호  
개정 1989. 12. 20. 조례 제 1001호  
개정 1992. 11. 28. 조례 제 1201호  
개정 1996. 7. 18. 조례 제 1500호  
개정 1999. 9. 8. 조례 제 1653호  
개정 2003. 1. 10. 조례 제 1806호  
일부개정 2005. 6. 8. 조례 제 1942호  
일부개정 2014. 10. 21. 조례 제 2564호(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 
전부개정 2016. 2. 18. 조례 제 2717호  
일부개정 2016. 11. 10. 조례 제 2784호  
일부개정 2019. 7. 1. 조례 제 3087호  
일부개정 2023. 5. 22. 조례 제 3502호(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진료비)**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.

**제3조(진료수가)**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정수한다.

**제4조(약가)**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.

**제5조(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)*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6조(그 밖의 수가)**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, 치과치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(약가를 포함한다), 소모품비,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정수할 수 있다.

제7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정수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
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7. 1., 2023. 5. 22.>

1. 공익상 필요로 할 때
2.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
3.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(관외지역을 포함한다)
4.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(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)
5.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
6.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)
7.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(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)
8.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(응급 투약에 한정한다)
9. 「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
10.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
11.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의 건강진단 수수료(감면에 따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)
12.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수수료(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른 사람에 한정한다)
13.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
1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

제9조(납부)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그날 납부한다.

제10조(추가 징수)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6. 2. 18. 조례 제2717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1. 10. 조례 제278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7. 1. 조례 제30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22. 조례 제3502호,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&lt;개정 2016. 11. 10.&gt;

증명발급 수수료(제7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수료
1. 보통진단서	1통당	500
2. 특별진단서(요양신청, 병사, 상해진단 용)	"	2,000
3. 사체검안서 및 검정서	"	5,000
4. 건강진단서	"	2,000
5.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	"	500
6. 성별 및 연령감정서	"	2,000
7. 사망진단서	"	500
8. 결핵검진 확인서	"	2,000
9. 의무기록 사본	"	3,000
10. 의료기록 CD 사본	1매당	3,000
11. 그 밖의 증명서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	1통당	300
※ 추가발급	"	100